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서식] <개정 2018. 12. 13.>

[ ]먹는물 수질검사기관
[ ]수처리제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
[ ]정수기 성능검사기관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0일

신청인	성명(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)	생년월일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)	전화번호
사무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
실험실 소재지	(전화번호:)	
검사대상 및 범위		

「먹는물관리법」 제43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, ○○유역환경청장, ○○지방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접수	검토	결재	지정서 발급
신청인	국립환경과학원, 유역환경청, 지방환경청	국립환경과학원, 유역환경청, 지방환경청	국립환경과학원, 유역환경청, 지방환경청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